



Australian Government

Department of Health

간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헌장 - 자택 간호

노인간호법 1997, 표 2 이용자 권리 원칙 2014
(2017년 2월 27일자 개정안)

1 간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- 자택 간호

일반사항

- (1) 각 간호 서비스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:
- (a) 한 개인으로서 대우받고 인정받을 권리, 개인의 선호를 존중받을 권리
 - (b) 사생활을 존중받고 품위있는 대우를 받을 권리
 - (c) 본인, 가족, 가정이 존중받는 간호를 받을 권리
 - (d) 간호 서비스 제공자에게 감사를 느낄 의무감 없이 간호 받을 권리
 - (e) 본인의 간호 서비스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, 법적 권리, 소비자 권리를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권리
 - (f) 옹호단체에 연락하고 기타 시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;
 - (g) 착취, 학대, 차별, 괴롭힘, 방치당하지 않을 권리.

소비자 주도 간호 - 선택권과 융통성

- (2) 각 간호 서비스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:
- (a)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승인된 서비스 제공자의 도움을 받을 권리:
 - (i) 자택 간호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 설정;
 - (ii) 자택 간호 제공에 있어서 지속적인 개입과 통제의 수준 결정
 - (iii) 본인이 스스로 하는 간호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
 - (iv) 가능한 한 본인의 자립성을 유지
 - (b) 이용 가능한 자원의 한도 내에서 본인의 목표, 판정 장애 정도, 개인의 선호에 가장 적절한 간호 및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
 - (c) 융통성 있는 자택 간호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및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
 - (d)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
 - (e)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, 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참여할 능력이 없는 경우, 간호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대변인이 참여하도록 할 권리.
 - (f) 자택 간호를 제공할 승인된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권리, 그리고 이용자가 원할 시 해당 서비스 제공자를 교체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권리.

소비자 주도 간호 - 간호 및 서비스

- (3) 각 간호 서비스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:
- (a) 본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및 판정 장애 정도에 적절하며, 믿을 수 있고 조직적이며 안전한 양질의 간호 및 서비스를 받을 권리
 - (b) 자택 간호 서비스 시작 전, 혹은 시작 후 14일 이내에 서비스 계획서를 제공 받을 권리
 - (c) 본인의 기타 간호 계획과 선호가 고려된 간호 및 서비스를 받을 권리
 - (d) 제공받는 간호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검토받고 (정기적 검토 및 개인의 상황 변화에 따른 검토) 필요에 따라 변경된 간호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

소비자 주도 간호 - 개인별 예산안과 월별 이용 가능 자금 및 지출 계산서

- (3A) 각 간호 서비스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:
- (a) 예정된 간호 및 서비스에 대한 개인별 예산안을 받을 권리
 - (b) 개인별 예산안의 검토 및 아래와 같은 경우 필요 시 수정받을 권리;
 - (i) 예정된 간호 및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간호 및 서비스 제공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, 또는
 - (ii) 이용자가 승인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필요 시 개인별 예산안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
 - (c) 해당 월에 제공된 간호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월별 이용 가능 자금 및 지출 계산서를 제공받을 권리.

개인 정보

- (4) 각 간호 서비스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:
- (a)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
 - (b) 본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권리

의사소통

- (5) 각 간호 서비스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:
- (a) 받은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권리
 - (b) 본 헌장을 한 부 받을 권리
 - (c) 합의된 모든 사항이 적힌 합의서를 제공받을 권리
 - (d) 이유를 불문하고 대변인을 선택할 권리.

의견 제시 및 불만 제기

- (6) 각 간호 서비스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:
- (a) 본인의 간호 및 서비스와 관련한 의견 제시 및 불만 제기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
 - (b) 간호 서비스 제외 및 여하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 없이 본인의 간호 및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
 - (c)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공정하게 불만 사항을 조사받고,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권리

이용료

- (7) 각 간호 서비스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:
- (a) 투명하고 열람이 가능하며 공정한 방법으로 이용료를 결정받을 권리
 - (b)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청구서를 받을 권리
 - (c) 정기적으로, 또한 본인의 재정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요청에 따라 이용료를 검토받을 권리
 - (d)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간호 및 서비스 제공에서 제외되지 않을 권리

2 간호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- 자택 간호

일반사항

- (1) 각 간호 서비스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진다:
- (a)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포함된 간호 직원들의 인권, 법적 권리, 직장 권리를 존중할 의무
 - (b) 간호 직원들을 착취, 학대, 차별하거나 괴롭히지 않을 의무.

간호 및 서비스

- (2) 각 간호 서비스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진다:
- (a) 자택 간호 합의서의 조항을 준수할 의무
 - (b) 본인의 서비스 필요 수준은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변화가 있는 경우 간호 및 서비스의 수정에 대해 협의할 의무
 - (c) 본인의 행동 및 선택에 위험 요소가 있을지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할 의무.

의사소통

- (3) 각 간호 서비스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진다:
- (a) 승인된 서비스 제공자가 간호 계획을 수립, 실행, 검토할 때 도움이 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
 - (b) 간호 및 서비스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승인된 서비스 제공자 및 그 직원에게 고지할 의무.
 - (c) 간호 서비스 이용자가 승인된 서비스 제공자를 바꾸기 전에 해당 서비스 제공자와 당일 근무 직원(들)에게 이용 중인 자택 간호 서비스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고지할 의무.

자택 방문

- (4) 각 간호 서비스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진다:
- (a) 간호 계획에 명시된 시간 또는 합의된 시간에 간호 직원들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용자의 자택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의무
 - (b) 자택 간호가 필요없는 날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통지할 의무

이용료

- (5) 각 간호 서비스 이용자는 합의서에 명시된 모든 이용료를 지불할 의무, 또는 본인의 재정 상태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대안을 협의할 의무를 진다.